

## 경운대학교 건설위원회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 학교시설의 신축과 리모델링 등과 관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실행 및 사용자의 이용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되는 건설위원회 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조직)**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**제3조(구성)** 위원은 교직원(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 포함), 관련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 단, 학교구성원 및 사회적 약자의 건축시설물 이용에 대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처장과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포함한다. <개정 2021.10.01.>

**제4조(임기)**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**제5조(위원장)** 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.

**제6조(회의)** ①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.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**제7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의결한다.

1. 신축건물의 설계에 관한 사항
2. 건물 리모델링 및 수선 등에 관한 사항
3. 각종 시설물의 보완 지원에 관한 사항
4. 위원장이 부의하는 기타 중요사항

**제8조(자료요청)** 위원회는 건축물 및 기타 시설의 건축 및 수선 등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.

**제9조(회의록작성)** ①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, 장소, 발언요지, 결정사항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한다.

② 회의록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한 후 보관한다.

**제10조(운영세칙)**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.

**제11조(사무)** 위원회의 사무는 행정지원처에서 관장한다. <개정 2021.10.01.>

**부 칙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<2021.10.01.>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